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2025.11.14.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5-277-102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상남도 창원시 거주자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1.14.(금)	25.11.24.(월)	25.11.25.(화)	25.11.26.(수)	25.12.03.(수)	25.12.04.(목)~ 25.12.13.(토)	25.12.15.(월)~ 25.12.17.(수)

1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홍보관 내 분양 상담전화 (☎055-277-102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성산더리브포레스트.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은(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14.(금)** 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11.24.(월)	25.11.25.(화)	25.11.26.(수)	25.12.03.(수)	25.12.04.(목) ~ 25.12.13.(토)	25.12.15.(월) ~ 25.12.17.(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홍보관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주택 홍보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미래웨딩캐슬 2층)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홍보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창원시 성산구** 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시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발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도시재생과 - 17408 호(2025. 11. 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34-1 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4~22층 3개 동 총 258세대 중 일반분양 143세대(조합원분 115세대 제외)

[특별공급 78세대(기관추천 14세대, 다자녀가구 14세대, 신혼부부 33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420	01	059.3860A	59A	59.3860	28.7907	88.1767	31.2448	119.4215	37.0252	15	2	2	3	0	1	8	7	2
	02	059.3960B	59B	59.3960	26.6836	86.0796	31.2500	117.3296	37.0314	10	1	1	2	0	1	5	5	2
	03	072.8917A	72A	72.8917	30.6113	103.5030	38.3505	141.8535	45.4456	35	3	3	8	1	4	19	16	2
	04	072.4955B	72B	72.4955	30.8442	103.3397	38.1421	141.4818	45.1986	24	2	2	6	1	2	13	11	2
	05	084.8783A	84A	84.8783	30.2505	115.1288	44.6571	159.7859	52.9188	26	3	3	6	1	2	15	11	1
	06	084.3662B	84B	84.3662	30.7424	115.1086	44.3876	159.4962	52.5995	33	3	3	8	1	3	18	15	2
	합 계									143	14	14	33	4	13	78	65	11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059.3860A	059.3960B	072.8917A	072.4955B	084.8783A	084.3662B
약식표기	59A	59B	72A	72B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홍보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는 총 공급세대 (143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무작위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 홍보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세대]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_이자후불제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계약후 15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6.03.31	26.07.31	26.10.30	27.01.29	27.04.30	27.07.30	
59A	103동 1,2호	1	2	136,183,921	233,881,079	370,065,000	10,000,000	27,006,500	37,006,500	37,006,500	37,006,500	37,006,500	37,006,500	37,006,500	111,019,500
		2	1	136,878,335	235,073,665	371,952,000	10,000,000	27,195,200	37,195,200	37,195,200	37,195,200	37,195,200	37,195,200	37,195,200	111,585,600
		3~5	3	137,573,120	236,266,880	373,840,000	10,000,000	27,384,000	37,384,000	37,384,000	37,384,000	37,384,000	37,384,000	37,384,000	112,152,000
		6~10	5	138,267,168	237,458,832	375,726,000	10,000,000	27,572,600	37,572,600	37,572,600	37,572,600	37,572,600	37,572,600	37,572,600	112,717,800
		11~14	4	139,840,001	240,159,999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59B	103동 3,4호	1	2	130,272,000	223,728,000	354,000,000	10,000,000	2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106,200,000
		3~5	2	131,589,440	225,990,560	357,580,000	10,000,000	25,758,000	35,758,000	35,758,000	35,758,000	35,758,000	35,758,000	35,758,000	107,274,000
		11~18	6	132,921,600	228,278,400	361,200,000	10,000,000	2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36,120,000	108,360,000
72A	101동 1,2호	1	1	161,471,040	277,308,960	438,780,000	10,000,000	33,878,000	43,878,000	43,878,000	43,878,000	43,878,000	43,878,000	43,878,000	131,634,000
		2	2	162,306,400	278,743,600	441,050,000	10,000,000	34,105,000	44,105,000	44,105,000	44,105,000	44,105,000	44,105,000	44,105,000	132,315,000
		3~5	6	163,116,000	280,134,000	443,250,000	10,000,000	34,325,000	44,325,000	44,325,000	44,325,000	44,325,000	44,325,000	44,325,000	132,975,000
		6~10	7	163,944,000	281,556,000	445,500,000	10,000,000	3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133,650,000
		11~19	14	165,600,001	284,399,999	450,000,000	10,000,000	3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20층이상	5	173,004,161	297,115,839	470,120,000	10,000,000	37,012,000	47,012,000	47,012,000	47,012,000	47,012,000	47,012,000	47,012,000	141,036,000
72B	101동 3,4호	2	2	161,239,199	276,910,801	438,150,000	10,000,000	33,815,000	43,815,000	43,815,000	43,815,000	43,815,000	43,815,000	43,815,000	131,445,000
		3~5	5	162,045,120	278,294,880	440,340,000	10,000,000	34,034,000	44,034,000	44,034,000	44,034,000	44,034,000	44,034,000	44,034,000	132,102,000
		6~10	5	162,863,552	279,700,448	442,564,000	10,000,000	34,256,400	44,256,400	44,256,400	44,256,400	44,256,400	44,256,400	44,256,400	132,769,200
		11~19	9	163,681,468	281,105,132	444,786,600	10,000,000	34,478,660	44,478,660	44,478,660	44,478,660	44,478,660	44,478,660	44,478,660	133,435,980
		20층이상	3	171,865,568	295,160,432	467,026,000	10,000,000	36,702,600	46,702,600	46,702,600	46,702,600	46,702,600	46,702,600	46,702,600	140,107,800
84A	102동 1,4호	2	1	185,937,520	319,327,480	505,265,000	10,000,000	40,526,500	50,526,500	50,526,500	50,526,500	50,526,500	50,526,500	50,526,500	151,579,500
		3~5	5	186,881,440	320,948,560	507,830,000	10,000,000	40,783,000	50,783,000	50,783,000	50,783,000	50,783,000	50,783,000	50,783,000	152,349,000
		6~10	7	187,827,200	322,572,800	510,400,000	10,000,000	4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153,120,000
		11~19	13	188,784,000	324,216,00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84B	102동 2,3호	1	2	186,208,000	319,792,000	506,000,000	10,000,000	4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51,800,000
		2	2	186,502,400	320,297,600	506,800,000	10,000,000	40,680,000	50,680,000	50,680,000	50,680,000	50,680,000	50,680,000	50,680,000	152,040,000
		3~5	6	186,881,440	320,948,560	507,830,000	10,000,000	40,783,000	50,783,000	50,783,000	50,783,000	50,783,000	50,783,000	50,783,000	152,349,000
		6~10	9	187,827,200	322,572,800	510,400,000	10,000,000	4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153,120,000
		11~19	14	188,784,000	324,216,000	513,000,000	10,000,000	4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개별부담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지를 제외함)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 · 2 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 · 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59B	72A	72B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0	1	0	0	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0	0	0	0	1	0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0	0	0	1	0	1	2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0	1	1	5
	장애인	경상남도	0	0	1	0	0	0	1
		부산광역시	0	0	0	0	1	0	1
		울산광역시	0	0	0	1	0	0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1	3	2	3	3	14	
신혼부부 특별공급		3	2	8	6	6	8	3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0	1	1	1	1	4	
생애최초 특별공급		1	1	4	2	2	3	13	
합 계		8	5	19	13	15	18	7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

	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남도청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세대구성(3)	5	1명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33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부동산 (건물+토지)	구분	금액	내용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3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head><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thead><tbody><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body></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1.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부동산 (건물+토지)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창원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11.24.(월) (청약Home : 09:00~17:30) (주택 홍보관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주택 홍보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미래웨딩캐슬 2층)
일반공급	1순위	2025.11.25.(화) (청약Home :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11.26.(수) (청약Home :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홍보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장소 안내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당첨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일시	계약체결 일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당첨자 발표 일시 : 2025.12.03.(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가능	- 일시 : 2025.12.15.(월) ~ 2025.12.17.(수) 3일간, (10:00 ~ 16:00) - 장소 :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주택 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미래웨딩캐슬 2층)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현장접수하신 분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가급적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직접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통지(유선/서면/문자 등)는 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번호 전화문의는 착오 또는 오안내 가능성 때문에 일체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2.03.(수) ~ 2025.12.12.(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2.0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u>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u>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기간	서류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특별공급/일반공급)	2025.12.04.(목) ~ 2025.12.13.(토), 10일간	장소 :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주택 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미래웨딩캐슬 2층)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특별공급/일반공급)	제출대상 세대 별도 안내 예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 당첨자에 한해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서류 제출은 홍보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 내용 중에 대리인 서류 추가필요 합니다.)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괄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모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의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및 구비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 대상 및 유의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및 무주택 서약서	본인	- 홍보관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세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교보자산신탁(주)]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확인(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세대원	- 배우자, 세대원 및 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 당사 홍보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상세"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홍보관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홍보관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입양인 경우 해당 자녀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홍보관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장+지역 포함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아래표-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홍보관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배우자와 혼인 전에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또는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발급
		○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 각서(양식) 홍보관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일 현재 직장 + 지역 포함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아래표-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홍보관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1년 이상),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부공개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존속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원	세대원 (직계 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당점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점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고일(2025.11.14.)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청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반드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반드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모든 서류 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이 필요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근로자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24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 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위촉증명서 및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미신고자)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및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② 세무서
	신규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분)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전년도 재무제표	① 세무서, 등기소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직인 날인된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등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해당 직장 날인)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홍보관 비치) ② 전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홍보관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14.)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명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및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와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결정세액의 환급이나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②,③ 해당 직장 및 세무서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 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부동산 소유현황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방법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 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위택스
		* 주택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 주택외의 집합건물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이택스, 위택스

‘부동산 소유 현황’ 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발급방법 : 이택스(서울) 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결과 위택스(서울 외)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④ 위택스 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토지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개별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위택스
		* 농지법 및 초지법에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④ 위택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주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 대상 및 유의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및 무주택 서약서	본인	- 홍보관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교보자산신탁(주)]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관계 확인(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청약통장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와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세대원	- 배우자, 세대원 및 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가점제 당첨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상세" 발급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상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관계 확인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 발급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하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한 경우와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기간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5.12.15.(월) ~ 2025.12.17.(수), 3일간	장소 :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주택 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미래웨딩캐슬 2층)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	355-0094-0866-53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의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니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제출 대상 및 유의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 수납은 불가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교보자산신탁(주)]
본인 계약 시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①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15만원 ②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부담 → 계약자 부담액 : 아파트 공급계약 7만 5천원 (발코니 확장 계약 : 하단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참조) ③ 수입인지 구입처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부동산실거래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홍보관 비치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비 및 유상옵션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요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홍보관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불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인지세 납부 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 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연대하여 각각 50%씩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계약자의 발코니 확장비 금액을 확인 후 위 과세기준표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재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분양계약에 한하여 분양계약자와 연대하여 1/2를(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홍보관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특례제외) 4.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국민주택 또는 규제지역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부적격 당첨 제한 기간 중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 전체에 대하여 1인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신청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이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사람은 무효 처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대는 예비입주에게 공급하지 않고 별도 재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기타 계약체결조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 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9

기타계약자 안내사항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들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특례제외)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 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 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입주자 사전점검요령]에 따라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1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지연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 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월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시 입주(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전체는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주택 홍보관 내 모형 및 CG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후 '입주자대표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 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①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59A	13,200,000	1,320,000	11,880,000	
59B	13,200,000	1,320,000	11,880,000	
72A	14,300,000	1,430,000	12,870,000	
72B	14,300,000	1,430,000	12,870,000	
84A	16,500,000	1,650,000	14,850,000	
84B	16,500,000	1,650,000	14,850,000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확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추후 자재발주, 공정관리 등의 사유로 변경계약 등은 불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 부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침실 발코니(타입별 침실 발코니 위치는 상이)의 경우 발코니 내측에는 이중창호, 외측에는 단창호가 설치되며(주방 발코니의 경우 내부에 터닝도어, 외부에 이중창호), 확장하지 않는 침실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설치 품목은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및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 및 분양 카다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 등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환기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발코니 확장 세대인 경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 및 천장,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의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고, 발코니 출입 창호 하부턱이 설치되어 창호 높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본공사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되어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조적벽체 또는 경량벽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외부창호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관계 법령에 의거 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농협	355-0094-7707-13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홍보관에 납부 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홍보관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안	제조사명	설치위치 및 수량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59A/59B	선택 ①	LG전자	거실, 안방	4,532,000	453,200	4,078,800	
	선택 ②	LG전자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7,502,000	750,200	6,751,800	
72A	선택 ①	LG전자	거실, 안방	4,653,000	465,300	4,187,700	
	선택 ②	LG전자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7,876,000	787,600	7,088,400	
72B	선택 ①	LG전자	거실, 안방	5,819,000	581,900	5,237,100	
	선택 ②	LG전자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7,876,000	787,600	7,088,400	
84A/84B	선택 ①	LG전자	거실, 안방	4,774,000	477,400	4,296,600	
	선택 ②	LG전자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8,932,000	893,200	8,038,8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이하 시스템 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제안된 사항에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 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홍보관 타입별 유니트에는 LG전자 제품이 전시용품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타입별 설치 위치 및 수량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디자인 및 사이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매립 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매립 배관(거실, 침실1) 등의 미설치로 인한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공사 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박스, 냉매매립 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는 제외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 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홍보관과 달리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옵션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천장형 냉매 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 여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선택 품목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 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현관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자동형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59A, 59B, 72A, 72B, 84A, 84B	유상	AL금속 프레임(실키베이지) + 브론즈 패턴유리 (천장형 센서, 스위치)	1,727,000	172,700	1,554,300	• 72A 홍보관 설치
		기본	벽체 설치 + 벽지 마감				

※ 현관 중문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의 구조 및 현관 크기에 따라 중문의 개폐 타입 및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등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홍보관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특성상 59C타입은 자동형 현관 중문 설치가 불가하며, 수동형 여단이 도어(바닥 프레임 없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특성상 도어 개폐 시 벽체에서 돌출되며,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 중문 미선택 시 현관 디딤판과 마루 사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시 주택형에 따라 벽체의 길이 또는 가구의 크기, 디테일,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 시와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장의 길이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동형 여단이 도어는 댐핑 기능이 없어,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추가 선택품목(주방, 알파룸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홍보관 과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③ 리빙 스타일 에디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고급화 (거실, 욕실)	59A	유상 [거실] 아트월 에디톤 월 맥스(900x2300) + [욕실1, 욕실2] 스마트 환기휀(욕실 복합환풍기) + 원형 방습등(욕조/샤워부스 위)	1,496,000	149,600	1,346,400	
	59B		1,100,000	110,000	990,000	
	72A		1,419,000	141,900	1,277,100	• 72A 홍보관 설치
	72B		1,441,000	144,100	1,296,900	
	84A		1,694,000	169,400	1,524,600	
	84B		1,694,000	169,400	1,524,600	
	전타입	기본 [거실] 아트월 포세린 타일(600x600) + [욕실1, 욕실2] 조명 일체형 환기휀(욕조/샤워부스 위)				

※ 리빙 스타일 에디션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주택형별의 구조에 따라 설치범위, 위치, 사이즈,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등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홍보관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은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빙 스타일 에디션] 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욕실1(공용), 욕실2(부부) 천장에는 무선 리모콘이 포함된 스마트 환기휀(욕실복합환풍기) 힘펠 제품(휴젠프3, FHD3-C150P)이 설치되며, 거실 아트월 벽에는

Lx하우시스 에디톤 월 맥스 제품(루나 라이트)이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홍보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 선택 시 욕실1(공용) 욕조 상부, 욕실2(부부) 샤워부스 상부 천장에 조명 일체형 환기휀 힘펠 제품(HV3-81JG)만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아트월 월 맥스 자재는 친환경 복합 스톤층 벽장재로 일반 타일과 특성이 상이합니다.

④ 주방 스타일 에디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시)	
주방 고급화	59A	유상	주방 상/하부장 연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프리미엄급) + 주방가전(3구 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12인용 빌트인 식기세척기) + 가구 FIX판넬	6,809,000	680,900	6,128,100	
		기본	타일(벽:300x600) + 엔지니어드스톤(상판:일반급) + 3구 가스 쿡탑				
	59B	유상	주방 상/하부장 연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프리미엄급) + 주방가전(3구 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12인용빌트인 식기세척기) + 가구 FIX판넬	6,171,000	617,100	5,553,900	
		기본	타일(벽:300x600) + 엔지니어드스톤(상판:일반급) + 3구 가스 쿡탑				
	72A	유상	아일랜드 하부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프리미엄급) + 주방가전(3구 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12인용 빌트인 식기세척기) + 아일랜드 원형 매입등	9,449,000	944,900	8,504,100	• ㄷ자 주방 • 홍보관 설치
		기본	타일(벽:300x600) + 엔지니어드스톤(상판:일반급) + 3구 가스 쿡탑				
	72B	유상	아일랜드 하부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프리미엄급) + 주방가전(3구 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12인용 빌트인 식기세척기)	8,778,000	877,800	7,900,200	
		기본	타일(벽:300x600) + 엔지니어드스톤(상판:일반급) + 3구 가스 쿡탑				
	84A	유상	주방 상/하부장 연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프리미엄급) + 주방가전(3구 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12인용 빌트인 식기세척기) + 가구 FIX판넬(기둥)	9,515,000	951,500	8,563,500	
		기본	타일(벽:300x600) + 엔지니어드스톤(상판:일반급) + 3구 가스 쿡탑				
	84B	유상	아일랜드 하부장 + 엔지니어드스톤(벽/상판:아일랜드:프리미엄급) + 주방가전(3구 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12인용 빌트인 식기세척기) + 가구 FIX판넬(기둥)	9,515,000	951,500	8,563,500	
		기본	타일(벽:300x600) + 엔지니어드스톤(상판:일반급) + 3구 가스 쿡탑				

※ 주방 스타일 에디션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주택형 별 평면 구성이 상이함에 따라 [주방 스타일 에디션] 추가 선택품목의 구성 내용이 타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주방 스타일 에디션] 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주방 상/하부장 연장 및 아일랜드 하부장은 유럽산 서랍재, 국산 수저분리함, 무선충전 콘센트, 후라이팬 서랍, 대형 사각 싱크볼이 포함되며, 주방가전은 3구 인덕션(하츠 SSIH-3605TTLB), 빌트인 전기오븐(삼성전자 NQ36A6555CK), 12인용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전자 DW80F71Y1SEW)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홍보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 선택할 경우, 확장 시 기본제공 품목으로 기본형 주방가구(기본형 서랍재/수저분리함, 일반 언더 싱크볼), 도기질 벽 타일(300X600), 일반급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3구 가스 쿡탑(나비엔매직 GRB-5003)이 설치됩니다.
- 타입 별 설치범위, 위치, 색상, 가구 및 마감의 길이, 구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본 공사 시 설치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터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의 흘러내림 또는 물 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연결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재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가전 설치로 인한 주방 가구의 길이가 축소될 수 있으며, 홍보관 등의 안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품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구의 개별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추가 선택품목(주방 키친핏 에디션, 주방 업 스토리지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홍보관 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인덕션,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수도, 전기 등의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의 구조 및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가전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주방 키친핏 에디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주방 냉장고장	59A	유상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패키지 + 냉장고 설치 공간장(상부장 포함) + 키큰인출망장	6,435,000	643,500	5,791,500	
		기본	냉장고장(설치공간)				

	59B	유상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패키지 + 냉장고 설치 공간장(상부장 포함) + 키큰인출망장 + 가구 FIX판넬	6,952,000	695,200	6,256,800	
		기본	냉장고장(설치공간)				
	72A	유상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패키지 + 냉장고 설치 공간장(상부장 포함) + 키큰인출망장 + 가구 FIX판넬	6,985,000	698,500	6,286,500	• 홍보관 설치
		기본	냉장고장(설치공간)				
	72B	유상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패키지 + 냉장고 설치 공간장(상부장 포함) + 키큰인출망장	6,369,000	636,900	5,732,100	
		기본	냉장고장(설치공간)				
	84A	유상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패키지 + 냉장고 설치 공간장(상부장 포함) + 키큰인출망장 + 키큰장	6,435,000	643,500	5,791,500	
		기본	냉장고장(설치공간) + 키큰장				
	84B	유상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패키지 + 냉장고 설치 공간장(상부장 포함) + 키큰인출망장	6,435,000	643,500	5,791,500	
		기본	냉장고장(설치공간)				

※ 주방 키친핏 에디션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주택형별에 따라 설치되는 가전기기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기기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키친핏 에디션] 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패키지는 1DOOR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됩니다.
- 해당 패키지는 삼성전자 제품(냉장: RR40C7995AP(우)/RR40C7895AP(좌), 냉동: RZ34C7965AP(우)/Z34C7865AP(좌), 김치: RQ34C7945AP(우)/RQ34C7845AP(좌), 페어키트)으로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홍보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제공되는 가전은 타입에 따라 사양, 색상, 도어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키친핏 가전제품은 B2B 전용 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 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계약자가 임의로 개별선택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타입 별 가구의 길이, 구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본 공사 시 설치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품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다른 추가 선택품목(주방, 알파룸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홍보관 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되는 인덕션 가전은 기본 제공되는 후드와 연동기능이 없는 제품이니, 계약 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가전 -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빌트인 냉장고의 문 열림 방향은 동일 주택형 일지라도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가전제품 품목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제품 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제품 사양 변경 시 모델명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의 구조 및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가전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침실 업 스토리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자녀방 불박이장 (침실1)	72A, 72B	유상	불박이장	1,243,000	124,300	1,118,700	• 72A 홍보관 설치
		기본	미설치				
자녀방 불박이장 (침실2)	59A, 59B,	유상	불박이장	1,243,000	124,300	1,118,700	
		기본	미설치				
	84A, 84B	유상	불박이장	1,496,000	149,600	1,346,400	
		기본	미설치				

※ 침실 업 스토리지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타입별 평형에 따라 가구의 형태, 크기 및 설치 위치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가구의 도어,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악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납성 개선 및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 선택 시 각 침실의 콘센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주방 업 스토리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수납특화 (알파룸)	72A	선택①	유상	팬트리 가구 도어 + 가구 FIX판넬 + 시스템가구 + 팬트리 벽지 + 원형 센서등(2EA) + (주방) 가구 FIX판넬	5,973,000	597,300	5,375,700	[주방 스타일 에디션] 미 선택 시
		선택②	유상	팬트리 가구 도어 + 가구 FIX판넬 + 시스템가구 + 팬트리 벽지 + 원형 센서등(2EA)	5,610,000	561,000	5,049,000	• 72A 홍보관 설치 • [주방 스타일 에디션] 선택 시
		-	기본	알파룸 목문 + 알파룸 벽지 + 알파룸 사각 면조명(1EA)	-	-	-	
	84A		유상	팬트리 가구 도어 + 가구 FIX판넬 + 시스템가구 + 팬트리 벽지 + 원형 센서등(2EA)	5,665,000	566,500	5,098,500	
			기본	알파룸 목문 + 알파룸 벽지 + 알파룸 사각 면조명(1EA)				

※ 주방 업 스토리지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59C타입의 주방과 72A, 84A타입의 알파룸에만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방 업 스토리지] 추가 선택품목은 옵션 적용 여부에 따라 타입별 평면 레이아웃 및 마감 적용부위, 가구 구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홍보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업 스토리지] 선택품목은 인테리어 통합 패키지 옵션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홍보관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기구의 사양 또는 개별 위치 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가구의 도어,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악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납성 개선 및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가구의 크기 및 구성, 하드웨어 사양, 마감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추가 선택품목(주방 등) 중복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마감 간섭 부위의 재질 및 디테일 등이 홍보관 과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 악세서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드레스룸 업 스토리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주택형 (약식표기)	구성 내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수납강화 (안방)	59A	유상	불박이장(선반형)	2,013,000	201,300	1,811,700	
		기본	미설치				

※ 드레스룸 업 스토리지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타입별 레이아웃에 따라 59A타입 안방에서만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하부에는 서랍, 상부에는 이동 가능한 선반형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가구의 치수, 디테일, 액세서리 및 하드웨어(힌지, 레일, 스위치 등) 사양 등은 안내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수급에 따라 가구 등의 마감재 색상, 패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농협	355-0094-7707-13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홍보관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홍보관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국토 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1

단지 내 · 외부 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사업주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부지 면적 등은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설에 따라서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예정임)의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면적분할이나 위치지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 시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진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에 해당하고 최대지반속도는 [0.239g]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등의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요구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신고 및 승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홍보관의 VR영상 등은 홍보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영상이므로 사이버 홍보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등은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및 본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고, 추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제외됩니다.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마감재의 디자인의 및 디테일, 패턴, 나누기 등이 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마감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세대 온도조절기, 스위치,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유니트 내에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제품으로 본공사 시 에어컨 크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보관 / 홍보물	• 홍보관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타입에 따라 홍보관의 조명기구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홍보관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모든 모형 및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본공사 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모형의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 주동 출입구,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부대복리시설 등은 본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위치, 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는 72A타입 유닛이 건립되며, 홍보관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물, 안내책자 및 모형도 등을 통해 차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에 시공된 마감자재 및 가전제품 등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으나,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홍보관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홍보관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 기준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관 내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공사 시 KS조도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홍보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단지 외부 여건	• 인허가 조건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일부는 도로(보도 및 차도) 확폭, 소공원(예정) 등 기반시설(공공시설)부지로 제공 및 기부채납되어 사업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시 기부채납되는 도로, 소공원(예정) 등 기반시설의 조성 및 모든 비용은 사업주체가 시행 및 부담하고 추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에 따른 비용은 분양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에 면하여 일부 확폭되는 도로의 조성은 사업주체가 시행하고 추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며, 확폭되는 도로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본 단지는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하여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사업부지 서측 도로(보도)는 2m 기부채납 되며, 동측의 도로는 3m 기부채납(예정)됩니다. • 본 사업부지 북측의 소공원(예정)은 기부채납(예정)됩니다. • 단지의 주변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폭 약 18m의 도로(보차혼용)가 설치됩니다. • 단지 서측에는 폭 약 8m의 보도가 설치됩니다. • 단지 동측은 단지과 도로 간 레벨차이로 인하여, 계단 또는 경사로, 석축 또는 옹벽, 화단 등이 설치되어 단지 내 출입이 제한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보도는 기존 보도와 동일하게 경사가 있으며, 해당 도로 이용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측 도로는 차량 진출입 편의를 위한 가감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매연,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주차구획, 주차 진출입구, 자전거주차장 등은 인허가(교통영향평가,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 단지 동측에는 약 5층 이하 규모의 아파트 단지, 상가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약 4층 이하 규모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시설(성당) 등과 새방골산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해충, 야생동물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약 15층 이하 규모의 아파트 단지, 상가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약 4층 이하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와 노인회관, 경작지, 주차장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교통체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은 단지와 인접대지간 레벨차이로 인한 석축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본 단지과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간의 레벨차이 또는 현장여건 등에 의하여 계단 및 경사로, 석축 및 옹벽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양곡초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양곡중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관련사항들을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시된 인접도로, 하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는 인허가청 협의 등에 따라 폭, 레벨, 조성 등의 내용이 단지 모형 및 각종 CG와 상이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 여건 I	단지배치	• 내부 도로 및 조경선,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각종 평가(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 단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단지 내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호실별 차이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변의 신축, 재건축 및 증축 등의 경우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상이하거나 침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조경 등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각종 공해(소음, 진동, 빛, 악취, 해충 등) 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과 제연을 위한 시설물(DA, 배기구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및 인접한 세대는 각종 공해(소음, 진동, 빛, 악취, 해충 등)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단지 내 보차도 바닥 마감, 조경, 세대의 층수, 창호형태 및 크기, 평면 형태, 입면 장식, 돌출발코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의 제원에 따라 운반 가능한 이삿짐의 크기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으로 인해 도로에 면한 면 또는 일부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동측에 공동주택 주출입구 1개소(보행자 및 차량 공용)와 서측에 부출입구 2개소(보행자 전용), 남서측에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주차장 및 상가) 1개소, 총 4개소의 단지 출입구가 설치되며 단지의 특성상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 문주는 동측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디자인 및 규모,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필로티 포함)(추가)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폭, 높이)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출입구 및 동 출입구 인근 세대와 저층부 세대는 문주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입주민 통행 및 사용, 단지 내 조명 등으로 인하여 소음, 눈부심,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1층 주차장과 연결되는 주차램프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입주민의 통행 등으로 사생활권 및 조망권,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지상1층 1호, 3호, 4호, 5호 라인에는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됩니다. • 102동 지상1층 4호 라인에는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됩니다. • 103동 지상1층 5호 라인에는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됩니다. • 필로티는 해당 동의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출입구, 공공의 통행로 및 자전거 보관소 등으로 이용되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의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필로티 상부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보도)는 긴급 및 서비스(이삿짐, 소방차량, 쓰레기차량 등) 차량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 및 지상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101동 주변과 102동 주변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세대 전면 공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비상시 소방차 정차 공간이 설치 및 표기될 수 있으며 임의로 위치 이동 및 제거, 물건적치 등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외관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번호는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호수의 표기 또한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측벽 등에 표기 또는 설치된 로고의 디자인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도시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및 경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현장여건,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벽체에는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마감재 두께 및 주동 저층부 외부 마감재(석재 등)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세대의 창호사이즈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색상, 옥상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디자인,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DA, 옹벽 등),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 바닥 디자인 등), 단지 사인 및 조명(단지 비사인물 포함), 주차장 구조체 공법 등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공법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일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동 및 공용부 입면 일부 구간에 재료(유리 포함)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동출입구 및 세대 저층부 2개층(필로티 내측 벽면과 계단실, 공용홀 제외)은 석재마감이 적용되며, 지하주차장 외부 노출데크 벽면, 단지 외곽 옹벽, 단지 내 단차 부위, DA 등 외부시설물,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부위는 석재뿔칠이 적용됩니다.

	시설물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에 공동주택 각동 필로티에 설치되며, 101동에 40대, 102동에 30대, 103동에 10대, 총 80대의 보관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소의 택배함 수량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설치됩니다. • 우편함의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경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 전면, 102동 후면에 공용으로 2개소가 설치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음식물 전용수거함이 설치됩니다. • 지하1층 102동 하부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보관소가 1개소 설치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이용에 관련하여 필요시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5호 라인, 102동 1호, 4호 라인, 103동 5호라인 옥상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소음, 빗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경	• 조경시설물은 분양관련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102동 1호라인 전면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대체되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부분과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해충침입, 악취발생, 환기, 채광 및 조망 불량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및 수경시설 등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수경시설, 조경수 등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또는 식재 여부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설계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사생활, 조망,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소방용 안전매트 설치 구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아 해당구간의 저층세대의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주차장은 지상1층 과 지하1층에 계획하였으며, 지하1층 102동 배면측은 레벨차이가 있어 경사로를 통해 이동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지하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은 공동주택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구분 계획되어 있어 타용도와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타용도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용구간으로 전용면적 등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그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개별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부 여건 Ⅱ	주차장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258대의 100.77%인 260대(지하 209대, 지상 51대/단, 지상 상가 주차 8대 제외)이며, 일반형, 확장형, 경차, 장애인, 주차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계획된 창고는 주차장에 부속된 공용창고로 입주인 개개인의 창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평면 계획에 따라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 또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및 계단실, 외벽, 구조물 등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높이 2.3m 이상의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진출입이 불가능 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차공간은 높이 2.3m 미만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일부구간은 건축물의 구조 및 기계,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높이 2.1m 미만의 차량만 주차 가능하도록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램프에 인접한 저층세대 및 맞은편 세대는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거리와 동선이 상이하여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동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 여건 Ⅲ	부대 복리 시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이며, 용도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이 설치되고, 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입주인 회의실이 설치되며, 일체의 운영 및 보안, 유지 관리는 입주인 자치적으로 하여야합니다. • 복리시설 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위한 입주인공동시설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이용에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입주인회의실 등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에서 시공하며,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 운동기구, 인테리어 마감 등은 별도 제공 또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하며 당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집기, 비품 등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인들이 부담하며 당사에 별도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커뮤니티시설 내부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을 별도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또는 관리사무소 선정 후 동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비스지원품목 일체가 인수인계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책임은 인수자(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있으며, 이“분양관련 서비스지원품목”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별도의 하자보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창원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홍보관 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주민운동시설과 입주인 회의실은 101동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휘트니스센터는 101동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주체가 내부 건축마감까지 진행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마감, 가구, 설비 등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골프연습장은 101동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주체가 내부 건축마감까지 진행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마감, 가구, 설비 등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부 여건 Ⅲ	부대 복리 시설	• 경로당은 102동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101동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는 101동 배면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및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른 거리에 따라 접근동선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각종 공해(소음, 진동, 빛, 악취, 해충 등) 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승하차 공간은 지상1층 102동 전면의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각종 공해(소음, 진동, 빛, 악취, 해충 등) 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승하차 공간은 어린이들의 통학차량 이용 시 승하차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로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눈부심,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실외기, 환기시설 등은 해당시설 외부 설치 또는 외기를 향하여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및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각종 공해(소음, 진동, 빛, 악취, 해충 등) 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입주 후에도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일정기간 운영한 뒤 향후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그로 인해 일정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린 생활 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및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단지 특성상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및 사용자가 단지 및 공용부에 접근 내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지상2층)은 101동 동측에 2개동 설치되며, 시설 이용자 및 입점업종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및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기변압시설 등의 시설물이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정압기는 101동 남서측 방면에 설치될 예정이며, 크기는 최소 3mx5m이다. 설치 위치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다.(공급업체 경남에너지(주))와 협의에 따라 설치기준, 사양 등이 변경될수 있음) • 가스배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며, 설치 계획에 따라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붕, 옥탑층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구조물,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및 시행자 또는 시공사 BI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또는 최상층 세대는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제연실 포함) 및 중수, 우수처리실, 제연 및 환기용 DA탑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수, 우수처리실은 지하 1층 102동 인근에 위치하여 인접한 102동의 1층에 급, 배기덕트(급기덕트: 3호라인, 배기덕트: 2호라인)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홈네트워킹 등 단지 내 공용설비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단지 내부 여건 Ⅲ	공용 설비 /시스템	• 본 단지는 공동주택의 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MDF실은 근린생활시설과 통합 구성되나,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장비 및 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복합시설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중앙감시장비 (홈네트워크, 원격검침, 주차관제, 비상벨, CCTV, HEAD END, 태양광발전, 전기차 충전설비, 승강기 감시반 등)는 지하1층 방재실에 각 시스템별로 통합 구성합니다.
		• 각 동의 계단실의 형태는 전용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 형태에 따라 설비PD,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형태 및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해당 동에 따라 각각 다르고, 외부에 면하는 환기창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수동으로 개폐 시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층당 101동 3~5호 라인, 102동, 103동 3~5호 라인은 2대씩, 101동 1~2호 라인, 103동 1~2호 라인은 1대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 호수에 따라 카달로그 또는 홍보관과 달리 본 시공 시 배치 및 동별 호실 위치에 따라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동호수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내 천정 높이는 기본 2,300mm, 우물천정 구간은 2,400mm이며,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욕실 등은 상이합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습니다. • 단위세대 안목치수 산정 시 기본형평면을 적용하며, 옵션마감재, 벽체,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은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이웃세대(상하좌우)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바닥, 천장, 벽체 등이 변경되거나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을 준수하며 법적 기준 이내의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일부 타입의 일부 실의 경우 세대 내 기둥으로 인해 실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타입의 기둥 위치 및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기본선택마감 등에 따라 본 공사 시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과 무상제공 품목, 확장 시 제공 품목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각 품목사항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 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은 하자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위치, 크기, 높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습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는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며,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설치된 난간대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가습적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난간대 설치 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난간대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위 세대 I	창호	• 침실과 욕실문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개폐방향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창호의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색상, 제조사 등은 본 공사 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창호의 열림방향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광고 홍보물 및 홍보관 등과 열림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재의 하자 및 오시공이 아닙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 프레임 및 날개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가구 / 마감	• 본 공사 시 세대 내 설치하는 가구는 자체 제작으로 시공여건 및 미관개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홍보관과 상이하게 디자인 및 가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편의 및 시공 상의 이유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홍보관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자재 수급에 따라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의 색상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의 하드웨어 사양 등은 동급 또는 동질 이상의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욕실거울 등이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측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의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의 차이로 인해 돌출 되거나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및 입주 시 반드시 실제 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의 기본사양 가전류 외 고용량 가전제품(전기인덕션 등)의 추가 설치에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와 주방상부 가구장에는 소방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의 깊이가 협소하여 수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설치 공간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침실 등의 벽체의 마감 두께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장의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정고는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기둥 및 건축 구조와 천장 내부의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내부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시트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홍보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강마루는 생산시기에 따라 마감재 색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는 자재의 하자 및 오시공이 아닙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마감재의 나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샤워부스 포함),현관 등의 단차 및 타일 줄눈의 모양 및 크기는 홍보관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추가선택품목 마감재 적용 시 설치 마감재로 인해 몰딩, 문선과 벽 마감 사이의 간격이 돌출되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자재의 하자 및 오시공이 아닙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표면결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홍보관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생산일자, 생산공장(지)에 따라 이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홍보관 및 모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홍보관을 우선으로 함) ※ 59B타입 공간 안내 • 다른 타입 대비 거실 아트월 길이가 협소하여 월패드의 위치가 소파 벽으로 이동 설치되오니, 계약 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타입 대비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공간이 협소하며, 드레스룸 내에서 가전기기(의류관리기 등)의 설치와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평면도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로 인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단지는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른 추가 단열공사 시 비확장 세대 측에 우선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며, 이로 인하여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및 실내 공간 등 일부 구간의 바닥, 벽체, 천장 일부가 돌출, 단차, 높이 및 폭 축소,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부 공간 축소 등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세탁실의 경우 일반적인 사이즈의 세탁기 단독 설치로만 설계되어 있으며, 추후 건조기 설치 시 수전 높이, 가스계량기 등의 간섭으로 이동 및 설치가 불가하거나 창문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폭이 협소한 일부 세대의 경우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의 발코니에는 투시형 난간 또는 발코니전용 단창이 설치됩니다. • 공동주택 발코니 내 세탁기 설치 등으로 인한 단차 발생구간은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결로방지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겨울철 수도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보일러, 전열교환기,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전열교환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현장 여건상 위치와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계획에 따라 일부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으며 물청소 시 하부층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세대 II	발코니 / 실외기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일체형 전동식빨래건조대가 설치되어 별도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폭이 협소한 일부 세대의 경우 전동빨래 건조대의 빨래봉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빨래건조대가 미설치되고 조명기구로 대신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또는 환기시스템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이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 (창호, 그릴, 전등 등)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내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외부에 별도 설치가 불가하오니 구매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실 그릴창의 방충망을 닫고 사용 하는 경우에는, 냉방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실 그릴창의 그릴을 개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쇄한 상태로 작동 시 냉방성능 저하, 고장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 또는 그릴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실과 세탁실이 동일 공간에 설치되며 개폐형 환기창을 통해 외기와 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급·배수 배관의 동파위험이 있으며 하절기에는 실외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열기 축적으로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고장이 우려되오니 보온 및 환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59A, 59B, 59C, 72A 타입 실외기실 미계획 안내 • 일부 타입의 경우 별도의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2 또는 발코니3에 실외기 그릴창 설치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코니2 또는 발코니3 내부 실외기 설치로 인해 보일러 및 세탁기 사용 및 점검 시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공간 등	• 세대 내 일부 발코니에는 화재 등 유사시 대피를 위하여 건축법 제46조제4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발코니의 사용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비상시 화재 등으로부터 대피하거나, 대피공간의 창호를 통해 외부로 소방 사다리차 등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공간으로 입주 후 임의 훼손, 변경 및 제거, 물건적재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상 3층 이하의 세대는 설계계획, 인허가청의 요구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시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지상3층~지상10층)에는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완강기용 발 받침대, 완강기 고정대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설치위치는 관할소방서등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 / 기계 설비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매립배관(거실+안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 시 배관이 노출되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 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홍보관 세대 내 설치된 전기기구(홈네트워크,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에는 계획된 식탁 위치를 기준으로 설치하였으므로 계약 전 홍보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내 양변기는 중수도가 연결되며, 그로 인해 냄새 및 탁도, 신체 접촉제한, 비데 사용 등 사용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가구 사용 시 수납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홍보관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보일러는 홍보관에 설치된 동등이상의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사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

12 기타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증서 번호</th><th>보증금액(원)</th><th>보증기간</th></tr> </thead> <tbody> <tr> <td>제 01282025-101-0006400호</td><td>₩46,061,011,080</td><td>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td></tr> </tbody> </table>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5-101-0006400호	₩46,061,011,08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5-101-0006400호	₩46,061,011,08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 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대금 채권의 양도

- ① “분양자(매도인)”는 보증사고(조합사업비대출보증약관 또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사고를 말함)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 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 액이 있을 경우 “분양자(매도인)”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 위치, 설치 개수 등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적용	2등급
창의 기밀성능		적용	1등급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하는 제품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2, 별표2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5조제11호 가목 준수 변압기는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역률개선용콘덴서 전동기별로 설치 간선 전압강하는 내선규정 따름
	조명설치(다목)	적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침실, 거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설치
	고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각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호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교보자산신탁(주)	에스지씨이앤씨(주)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62, 1층(신촌동, 양곡아파트 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 B동 7, 8층(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법인등록번호	194271-0008678	110111-1617434	110111-0327555

■ 차입형토지신탁

- 본 공급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교보자산신탁(이하 '시행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이하 '시행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 에스지씨이앤씨(주)(이하 '시공사'라 함) 간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1.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을 "계약자"는 인지한다.
- 2.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다.
- 3.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4. "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신촌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다.
- 5.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을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홍보관 :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홈페이지 (www.성산더리브포레스트.com)

■ 홍보관 위치 및 분양문의 :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주택 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미래웨딩캐슬 2층) / 055-277-1025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